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41

발의연월일: 2024. 8. 21.

발 의 자 : 윤상현 · 김선교 · 이헌승

성일종・안철수・김 건

김석기 · 주호영 · 김종양

박정훈 · 송석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현행 간첩죄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 중국 동포 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고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다변화된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수십 년 전 제정된 간첩죄 관련 법 조항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특히 기존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 (Non-state actors)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함.

아울러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인 산업안보,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절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8조).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간첩) ①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를 위하여 간첩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에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③ 산업상의 기밀(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말한다)을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를 위하여 기망·절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훼손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8	/비 '
第98條(間諜) ① 敵國을 爲하여	제98조(간첩) ① <u>외국과 국내외</u>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를 위하
助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여 간첩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②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	<u>징역에 처한다.</u>
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과 국
	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에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
	<u>다.</u>
	③ 산업상의 기밀(국가핵심기
	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말한다)
	을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
	<u>국가행위자를 위하여 기망·절</u>
	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훼손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